

정보통신표준화 제도개선 추진 - 정보통신표준화지침(안) -



徐 光 鉉

정보통신부 기술기준과 사무관

1. 표준화 추진현황

우리는 흔히 표준과 기술기준을 권장사항과 강제 사항으로 구분한다. 정보통신부는 그 동안 전화망을 중심으로 한 전기통신망의 운영과 무선주파수의 관리업무를 관장해 왔기 때문에 통신망 위해방지(No harm to the network)와 주파수 위해방지(No harm to the spectrum) 차원에서 주로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통신기기와 무선기기의 기술적 조건을 규제해 왔으며 상대적으로 표준화 활동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었다.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통신기술과 컴퓨터 기술이 접목된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신망은 고도화, 지능화되고 여기에 접속·운영되는 통신기기, 방송기기, 무선기기, 컴퓨터, S/W 등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OSI 하위계층 수준의 기술기준뿐만 아니라 OSI 상위계층 수준의 표준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90년 「전기

통신표준제정에 대한 시행세칙」과 「전산망표준심의회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전기통신 분야와 전산망분야로 구분 추진하여 왔다.

구 분	전기통신분야(KCS)	전산망분야(KIS)
근 거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산망법
주요대상	통신·방송장비	컴퓨터, S/W
사 무 국	한국통신기술협회	한국전산원

'94년까지 전기통신분야 140건, 전산망분야 50건 등 190건의 표준을 제정 보급하였으며, '89~'94년동안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기고서 130편을 제출하는 등 정보통신표준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2. 표준화 제도개선 추진배경

'90년 정보통신분야의 표준화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의 발달에 따라 표준의

심 의와 연구기능을 전문화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또한 표준만 제정되어 있고 제정된 표준에 대한 인증제도가 없어 정부기관이나 이용자 등이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하게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을 부여하여 이용자가 제품을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는 국가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ITU에서 유선과 무선분야의 표준이 통합화추세에 있고 국제 및 지역표준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국내 표준화 추진체계의 재정립과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의 「전기통신표준제정에 대한 시행세칙」과 「전산망표준심의회 운영세칙」을 폐지하고 「전기통신표준화지침」과 「전산망표준화지침」을 각각 새로 제정하게 되었다.

3. 표준화제도 개선내용

■ 전기통신표준화지침

ITU 표준화 체제에 맞추어 유·무선을 통합하여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기통신기본법과 전파법에 근거한 통합지침으로 제정하고 통신분야 통합표준의 성격에 맞게 KTS(Korea Telecommunications Standard)를 KCS(Korean Communications Standard)로 개칭하였다.

표준안에 대한 기술총회(통신기술협회)와 전기통신표준심의회(정보통신부)의 심의기능을 통신표준총회로 통폐합하여 중복성 기능을 일원화하였다. 통신표준총회의 위원은 통신기술협회의 회원사와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위촉하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통신표준총회의 추천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토록 하였다. 표

준총회의 의장은 표준안의 작성과 표준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표준총회 산하조직으로 연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위원회의 의장은 표준안 작업을 위한 실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산망표준(KIS)과 상호협조를 통하여 표준간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보통신표준협력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다.

표준의 제정절차는 연구위원회의 표준안 작성·검토과정을 거쳐 통신표준총회가 표준안을 심의하고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이 채택·고시하게 되며, 조속히 표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통신표준총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잠정표준을 채택하여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신표준총회의 회의는 총 투표단위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투표한 투표단위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의결투표단위는 협회 회원사의 경우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위촉하는 위원의 경우는 위원당 1표를 부여하였다. 채택된 표준에 대하여는 최소한 3년 주기로 해당 표준의 확인, 개정 또는 폐기 여부를 검토토록 하여 표준의 노후화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표준화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의 취급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ETRI 정보통신표준연구센터의 연구개발과 한국통신기술협회의 국제표준활동에 관한 근거를 지침에 마련하여 표준화 활동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표 1>과 같이 표준번호체계를 단순화하여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현재 표준만 제정되어 있고 제정된 표준에 대한 인증제도가 없어 정부기관이나 이용자 등이 전기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하게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인증제도에 의해 인증마크가 제품에 부착되기

지상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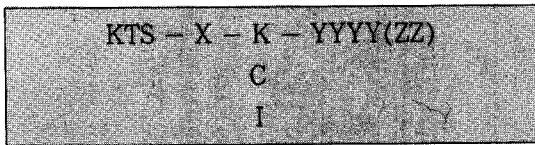
정보통신표준화 제도개선 추진

때문에 이용자가 제품을 신뢰하고 이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분야의 인증기관으로 한국통신기술협회를 지정하였으며 표준시험

기관은 신청을 받아 정보통신부에서 심사후 지정할 예정이다.

〈표 1〉 전기통신표준 번호체계

〈현 행〉



KCS :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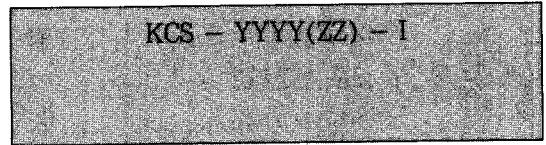
X { 1 : 정보통신분야
2 : 전산망분야

{ K : 한국고유표준
C : CCITT 표준 준용
I : ISO 표준 준용

YYYY : 일련번호

ZZ : 제정년도

〈개 선〉



I : Interim(잠정표준)의 경우에만 부여

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는 자사 제품이 전기통신표준에 적합함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하는 시험기관에 시험을 신청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한국통신기술협회에 제출하면 협회에서 관련 서류를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인증을 부여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기관과 통신사업자들에게 우선구매를 권장하게 된다.

■ 전산망표준화지침

컴퓨터 H/W, S/W 등 전산망분야의 표준화는 그 동안 정보통신부장관이 주관하여 왔으나 각 전산망별 추진위원회 또는 정부부처도 소관 전산망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전산망표준화지침에 마련하여 다양한 표준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하였다.

전산망표준심의회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위촉하는 정부부처의 정책담당자, 전문가 등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전산망표준심의회 의장은 표준심의회 산하조직으로 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표준안의 작성과 표준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위원회의 의장은 표준안 작업을 위한 실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기통신표준(KCS)과 상호협조토록 하여 표준간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보통신표준협력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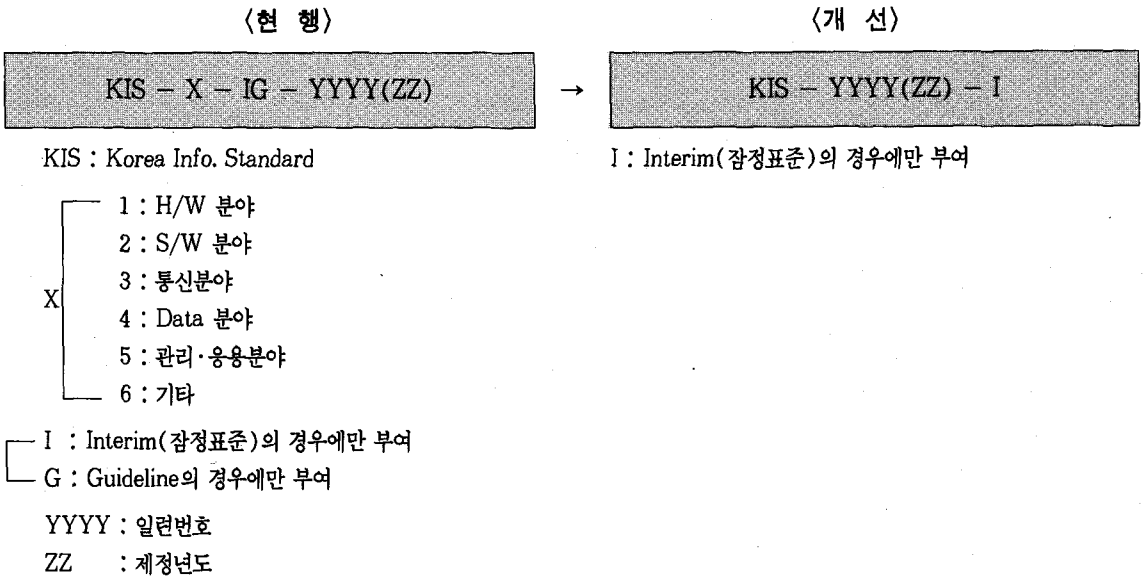
표준의 제정절차는 연구위원회의 표준안 작성 및 검토과정을 거쳐 전산망표준심의회가 표준안을 심의하고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이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택·고시하게 되며, 조속한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전산망표준심의회와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잠정표준을 채택하여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채택된 표준에 대하여는 최소한 3년 주기로 해당 표준의 확인, 개정 또는 폐기 여부를 검토토록 하여 표준의 노후화 방지토록 하였으며 표준화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의 취급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산원이 표준개발과 국제표준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지침에 명시하였으며 전산망표준 번호체계를 <표 2>와 같이 단순화하여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표 2> 전산망 표준 번호체계



- I : Interim(잠정표준)의 경우에만 부여
- G : Guideline의 경우에만 부여

YYYY : 일련번호
ZZ : 제정년도

표준을 활용한 전산망기기, S/W 등의 성능향상과 전산망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한국전산원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시험기관은 KAIST 등 전산전문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 기대효과

그 동안 전기통신표준심의회에 의해 정부주도로 수행해 오던 정보통신표준화 추진체계를 통신표준

총회에 의해 민간주도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의 세계화에 적극 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정보통신부의 설립에 따라 통신, 방송,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산업 전반에 대한 표준화를 종합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인증을 실시함으로써 제품사용자들이 해당 제품을 신뢰하고 이를 구매해 사용하게 되는 것은 물론 생산업체가 관련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통신부고시 제 1994-97호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 및 전파법 제2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표준화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4년 12월 29일
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표준화지침(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 및 전파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전기통신표준의 제정·보급 및 활용을 통하여 전기통신의 원활한 운영과 전파의 이용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능률의 증진과 이용편의를 도모하여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한국전기통신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기통신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신의 호환성, 연동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이 지침에 의하여 제정되어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을 말한다.

제 2 장 표준의 제정 및 개정

제 1 절 조 칙

제 3 조(통신표준총회) 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 소속하에 통신표준총

회(이하 “표준총회”라 한다)를 둔다.

제 4 조(표준총회의 위원) 표준총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통신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사업에 참가하여 분담금을 납입하는 자(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
2.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변하는 자
3. 통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제 5 조(표준총회의 의장 등) ① 표준총회의 의장은 위원중에서 표준총회의 추천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②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은 표준총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표준총회를 대표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한다.

④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표준총회의 기능) 표준총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표준제정·개정·폐지·확인 및 인증을 수행하는 표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표준에 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보고 또는 건의하는 일

제 7 조(연구위원회등) 표준총회의 의장은 표준에 관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협회의 사무총장(이하 “협회총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연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연구위원회의 의장은 필요시 협회총장과 협의하여 표준안 작업을 위한 실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 8 조(운영위원회) 협회총장은 표준총회에 상정할 안전의 조정과 표준화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하여 표준총회 의장·부의장, 연구위원회 의장, 관련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 9 조(정보통신표준협력위원회) 정보통신부장은 이 지침에 의하여 제정된 표준과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4 조의 2에 근거한 “전산망표준화지침”에 의하여 제정된 표준간의 호환성을 증대시키고 정보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표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 10 조(사무) 협회총장은 표준총회, 연구위원회, 운영위원회 또는 관련 실무조직(이하 “표준총회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지원한다.

제 11 조(간사) ① 표준총회 등의 간사는 협회총장이 협회의 직원중에서 지명하거나 협회의 직원이 아닌 자로서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개최계획의 수립, 회의소집에 필요한 절차의 수행 및 회의록 작성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 12 조(수당) 협회총장은 표준총회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 절 표준의 제정 및 개정절차

제 13 조(표준의 연구개발) 전기통신기본법 제 15 조의 2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정보통신 표준연구센터장(이하 “표준연구센터장”이라 한다)은 표준기술발전에 따른 표준의 신속한 개발·보급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 14 조(국제표준화의 활동) 협회총장 및 표준연구센터장은 최신의 국제표준기술을 활용하고 표준에 관한 적합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국제적인 상호인정의 확대등 국제표준기구 또는 외국표준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연구개발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 15 조(표준안의 제안) 표준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 및 단체(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하여 협회총장에게 표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제안할 수 있으며 협회총장은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표준총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6 조(초안의 작성) 협회총장은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된 이해관계인의 제안 또는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내용을 기반으로 표준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표준총회 또는 해당 연구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 17 조(연구위원회안의 채택)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안의 검토를 요청받은 연구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연구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표준총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위원회는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8 조(잠정표준의 채택) ① 표준총회의 의장은 표준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거나 표준의 기술발전추세등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표준총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위원회안을 잠정표준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 1 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연구위원회안을 잠정표준으로 채택하고 고시할 수 있다.

제 19 조(표준의 채택) ① 표준총회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16 조 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표

준안을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표준총회가 타당하다고 보고한 표준안이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같은 조건하에 있는 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8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0조(회의) ① 표준총회의 표준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회의는 총 투표단위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투표한 투표단위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투표단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협회사업에 대한 참여분담금을 토대로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총장이 결정

2. 제4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위원당 1표

③ 연구위원회의 표준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회총장은 회의소집 일주일 전까지 표준총회 또는 연구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회의소집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총회와 연구위원회의 의결은 의장의 결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의견수렴) ① 협회총장은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등 표준에 관심을 가진 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회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표준의 명칭)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표준은 “한국전기통신표준”이라 하며 누구도 이 지침에 의한 표준이 아닌 것을 “한국전기통신표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지적재산권의 취급지침) 정보통신부장관은 표준화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의 취급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이의제기)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고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협회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이의제기처리) ① 협회총장은 이의제기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제기된 표준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표준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제기 처리결과를 협회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총장은 이를 이의제기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표준의 개정, 폐지 및 확인) ① 협회총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채택된 표준에 대하여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하의 주기로 해당표준을

확인하고 그 개정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5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표준번호부여) 협회총장은 채택된 표준에 대하여 별표1과 같이 표준번호를 부여한다.

제 3 장 적합인증

제28조(인증을 수행하는 표준의 지정)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준총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 제품 및 서비스등(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의 인증을 수행하는 표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등의 인증을 수행하는 표준을 지정하였을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9조(인증의 신청) ① 제품등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는 제품등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표준에 적합하게 구현되었는지를 인증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제49조의 규정의 의한 시험성적서 1부.
2. 제품등의 구성도, 기능설명서, 사양서 및 사진 각 1부.
3. 품질보증계획서 및 사후봉사계획서 각 1부.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

표준화지침”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등의 해당 표준이 이 지침에서 정하는 표준과 동일한 경우 제2항의 각호의 서류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등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자체시험성적서의 인정)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대상 제품등이 표준에 적합하게 구현되었는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시험기관(이하 “표준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적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품등의 자체시험성적서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시험성적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자체시험성적서가 표준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시험되고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당해 제품등의 인증에 필요한 표준별 시험도구를 보유·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31조(인증심사)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품등이 해당 표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제출서류 등이 적합한지 여부
3. 제품의 품질보증활동계획 및 사후봉사활동계획이 적절한지 여부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부내에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사업소를 방문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처리기간)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인증 부여) 정보통신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표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인증표시) ① 제품등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등의 제품, 포장, 용기 또는 선전을 위한 인쇄물에 당해 제품등이 표준에 적합하게 구현되었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인증의 표시는 별표2와 같다.

③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당해 제품등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인증 해지)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한 제품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제품등의 인증을 해지할 수 있다.

1. 인증한 제품등의 해당 표준이 개정 또는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거나 인증한 제품등의 생산 또는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인증한 제품등의 중요한 기능이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기타 이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인증을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6조(이의제기 및 처리) ① 인증을 신청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변경신고) ① 상속,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양도 등으로 인하여 인증받은 제품등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인증한 제품등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는 제품등의 부품교환 등 기술적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이 인증받은 제품등의 적합성에 영향을 미쳐 재인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인은 제29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증변경신고서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4 장 제품등의 시험

제 1 절 표준시험기관의 지정

제38조(표준시험기관의 지정신청)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품등이 표준에 적합하게 구현되었는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표준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표준시험기관 지정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표준시험기관의 지정기준) 표준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40조(표준시험기관의 지정)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한 시험기관이 제39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표준시험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
2. 표준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인증대상표준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을 신청한 시험기관이 제39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시험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표준시험기관의 유효기간 등) ① 표준시

험기관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유효기간 종료일 3월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지정갱신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유효기간 갱신에 대하여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변경신고등) ① 표준시험기관의 장은 그 사업소의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인증대상표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를 그 변경예정일 15일 전까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는 제40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신고를 수리하거나 변경승인신청을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표준시험기관 지정서를 재교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3조(시험업무의 휴지 및 폐지) ① 표준시험기관의 장이 시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지정의 효력상실 및 취소) ① 표준시험기관이 시험업무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표준시험기관의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표준시험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표준시험기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때
 3.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인증대상 표준을 변경하거나 시험업무를 휴지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업무를 부정확하게 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시험의 접수를 거부한 때
 6. 제39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때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표준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험업무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당 표준시험기관에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거나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체없이 표준시험기관 지정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5조(표준시험기관의 방문확인 등)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표준시험기관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당해 표준시험기관을 방문하여 업무현황 또는 관련서류, 설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절 제품등의 시험 신청 및 심사

제46조(시험 신청) 제품등의 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시험신청서와 인증대상 제품등을 표준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시험업무) ① 표준시험기관의 장은 표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표준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원으로 하여금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사업소를 방문 지도할 수 있다.

제48조(처리기간) 시험업무의 처리기간은 시험대상 및 형태에 따라 표준시험기간의 장이 별도로 정하되 시험의뢰일로부터 총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시험성적서) 표준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수행후 시험성적서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50조(인증 및 시험 수수료) 인증 및 시험 수수료는 협회총장이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1조(인증한 제품등의 구매권고)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등에게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한 제품등의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52조(표준의 보급촉진) 협회총장은 표준의 보급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3조(인증한 제품등의 품질관리) ① 인증한 제품등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는 인증받은 제품등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협회총장은 인증한 제품등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또는 공급자에 대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4조(비밀의 보호) 협회총장 또는 표준시험기관의 장은 인증 또는 시험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신청인의 모든 비밀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제55조(권한의 위탁)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8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를 협회총장에게 위탁한다.

제56조(보고사항) ① 협회총장은 매 반기초 15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이전 반기의 표준총회등의 운영실적
- 2. 이전 반기의 표준화 활동실적 및 다음 반기의 표준화 활동계획
- 3. 이전 반기의 인증실적
- 4.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표준연구센터장은 매 반기초 15일까지 이전 반기의 연구개발실적 및 다음 반기의 연구개발계획과 제1항 제2호의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험기관의 장은 매 반기초 15일까지 이전 반기의 시험실적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세부지침) 협회총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기존의 표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표준은 이 지침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다른 고시의 폐지) 체신부고시 제65호(1990. 7. 27, 전기통신표준제정에대한시행세

칙)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전기통신표준 번호체계(제27조 관련)

1. 전기통신표준의 번호는 KCS XXXX (YY) I 형태로 부여한다.

1) KCS는 Korean Communications Standard 를 의미한다.

2) XXXX는 순번을 나타내는 일련번호로서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며 자릿수에는 제한이 없다.

3) YY는 표준제정 또는 개정연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고 자릿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괄호로 묶는다.

4) I는 Interim으로 잠정표준을 의미하며, 추후 표준으로 확정되면 그 표준의 번호는 I를 삭제하고 나머지 일련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2. 개정된 표준이 개정되기 전의 표준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개정되기 전의 표준일련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3. 개정된 표준을 개정되기 전의 표준과 병존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개정된 표준에 새로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4. 표준이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표준의 일련번호는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

[예] KCS 21 ('94) I

[별표 2] 인증표시 (제34조 관련)

제품등의 표면에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표시를 한다.



[별표 3] 표준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제39조 관련]

1. 조직과 관리

- (1) 법적지위가 확립되어 있을 것
- (2) 시험에 관계되는 직원의 직무분담이 문서화되어 있을 것
- (3) 조직의 중립성과 판단의 독립성이 항상 보장되도록 조직·관리될 수 있을 것
- (4) 지적재산권 및 기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보안규칙과 수단을 가질 것
- (5) 품질관리 책임자 1인이 지정되어 있을 것
- (6) 기술총괄 책임자 1인이 지정되어 있을 것
- (7)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당해 규정이 정확하게 최신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을 것
- (8) 품질관리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여 원활한 운용이 가능한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 인력

- (1) 직원은 책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고,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을 갖고 있을 것
- (2)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을 것
- (3) 직원의 훈련 및 경험에 관한 정보가 유지 관리되고 있을 것
- (4) 상급 직원의 부재시에도 시험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직무대행자가 있을 것

3. 인증대상 표준 및 시험도구

- (1) 인증대상 표준이 명시되어 있을 것
- (2) 시험에 필요한 시험도구를 갖출 것
- (3) 그 시험도구가 사용되는 인증대상 표준이 명시되어 있을 것
- (4) 시험도구가 인증대상 표준에 대해 올바르게 시

- 험을 실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
- (5) 시험도구의 기능이 올바르게 유지되고 있음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확인할 수 있을 것
- (6) 시험도구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명된 경우 개선할 수 있을 것
- (7) 시험도구의 관리기록을 적절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 (8) 시험도구의 기능확인 작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

4. 시험방법 및 절차

- (1) 시험방법 및 절차, 시험도구의 사용방법, 시험 성적서의 작성 등에 관해 표준화된 지침서를 가지며 그것이 적절하게 재평가되고 동시에 직원에게 충분히 주지되어 있을 것.
- (2)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시험실시 방법이나 절차를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이 문서화되어 있을 것

5. 작업의 조건 및 환경

- (1) 작업환경을 검사하는 장비를 보유할 것
- (2) 작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
- (3) 외부인의 출입에 관한 제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6. 인증대상 제품등의 취급

- (1) 시험을 의뢰받은 제품등에 관하여 기록할 수 있을 것
- (2) 제품등을 보호하고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을 것
- (3) 시험이 완료된 제품등의 처리 및 반환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을 것

7. 시험의 실시에 관한 기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제품등의 인증 변경신고서

표준시험기관 지정신청서

1. 신청인

1. 신청인

1) 명칭 및 대표자 성명

1) 명칭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

2) 주소

2. 인증번호

2. 시험기관

3. 인증연월일

1) 명칭

4. 제품등의 명칭

2) 소재지

5. 변경사항

전기통신표준화지침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변경신고합니다.

전기통신표준화지침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표준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신고인 (인)

신청인 (인)

한국통신기술협회 사무총장 귀하

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첨부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지침 제39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
는 서류 1부. (별지 제7호의2 서식 참조)
2. 인증대상 표준 및 시험도구 현황 1부.(별지
제7호의 3 서식 참조)

〈별지 제7호의2 서식〉 표준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 조직과 관리

-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 (2) 시험기관의 조직도
- (3) 업무분담 현황(시험기관의 장의 이름 포함)
- (4) 보안관리 규정과 대책
- (5) 품질관리 책임자의 성명 및 직위
- (6) 기술관리 책임자의 성명 및 직위
- (7) 품질관리 절차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 인력

- (1) 훈련과정 및 매뉴얼을 포함한 교육계획
- (2) 훈련과 경력에 관한 사항
- (3) 권한 위임 규정과 대리인 성명

3. 인증대상 표준 및 시험도구

- (1) 인증대상 표준별 시험도구의 현황 및 보유계획
- (2) 기능확인을 위한 정기점검 규정
- (3) 시험도구의 관리 기록절차

4. 시험 방법 및 절차

- (1) 시험지침서(시험방법 및 절차, 시험도구의 사용방법, 시험성적서의 작성 등)
- (2) 표준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의 시험방법 및 절차 규정

5. 작업 조건 및 환경

- (1) 냉온방 장치 등의 설치현황 및 계획
- (2) 환경 정화 대책
- (3) 외부인의 출입 제한 규정

6. 인증대상 제품등의 취급

- (1) 취급규정(관리기록 포함)
- (2) 보관규정(파손대책 포함)
- (3) 처분 및 반환 규정

7. 시험결과의 기록 유지규정

8. 시험성적서 양식

지상중계

정보통신표준화 제도개선 추진

〈별지 제7호의3 서식〉

인증대상 표준 및 시험도구 현황

순 번	인증대상 표준	시 험 도 구 명

〈별지 제8호 서식〉

표준시험기관 지정서

1. 지정번호
2. 표준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인증대상 표준 : 별지 제8호의2 서식 참조
4. 유효기간 만료 연월일

전기통신표준화지침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표준시험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인)

〈별지 제8호의2 서식〉

1. 지정번호
2. 인증대상 표준 및 시험도구

순 번	인증대상 표준	시 험 도 구 명

3. 표준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별지 제9호 서식〉

표준시험기관 지정갱신 신청처

1. 신청인
 - 1)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2) 주소
2. 표준시험기관
 - 1) 지정 번호
 - 2) 지정연월일
 - 3) 명칭
 - 4) 소재지

전기통신표준화지침 제41조의 규정에 위하여 위와 같이 표준시험기관으로 재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정 보 통 신 부 장 관 귀하

〈첨부서류〉

1. 세칙 제39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별지 제7호의 2 서식 참조)
2. 인증대상 표준 및 시험도구 현황 1부. (별지 제7호의3 서식 참조)
3. 시험실적, 시험도구의 장애 및 정기검사실행 현황 1부. (별지 제9호의2 서식 참조)

〈별지 제12호 서식〉

시 험 신 청 서

1. 신청인

- 1)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2) 주소

2. 제조자

- 1)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2) 주소(본사, 공장)

3. 인증대상 제품등 및 인증대상 표준 항목

전기통신표준화지침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표준시험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인증대상 제품등의 취급설명서 1부